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6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오세희·박홍근·채현일

박해철・김 현・주철현

이기헌 • 박희승 • 강준현

김태선 · 서영교 · 이재관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

제13호의4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화재공제료"로 한다.

③ 정부는 제17조제5항제13호의4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상인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에 제1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4.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료의 지원) ①・② (생 략)	료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정부는 제17조제5항제13호
	의4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상
	인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u>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
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	<u>험료 및 화재공제료</u>
로 정하며, 지원 수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
	승)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⑤
을 한다.	
1. ~ 13의3. (생 략)	1. ~ 13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의4.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

	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